

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0. 6 평창군수(문화관광과장)
나. 회부일자 : 2001.10. 12
다. 상정일자 : 2001.10. 13 제8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특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문화관광과장 장하진)

가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적용대상 시설물(안 제2조)
○ 사용허가·우선순위(안 제4조·제5조)
○ 사용료·이용료(안 제10조·제12조)
○ 위탁관리 규정(안 제2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읍면별로 있는 체육시설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임.
- 시기는 늦은감이 있으나 우리군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체육시설을 지금부터라도 조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,

- 조례안은 적용될 시설물을 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허가·사용 우선순위지정 시설개방과 사용기간을 구체화 하였으며, 이용자 손해배상·관람료 징수에 관한 절차와 위탁관리 및 관리위임 규정 관리자 의무 및 취소사유등을 명시하였음.
- 법령형식·자구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체육활성화라는 큰 목적보다는 시설물의 관리라는 수단을 더 중요시하는 착오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시설관리에 군비가 다소 투자되더라도 좀더 사용료 금액을 낮추어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군민의 소득수준·관리비용 총당금 유사지역 운영사례등을 종합분석한후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한 시설물을 단순관리비 때문에 시설물 이용율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input type="radio"/>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은?	<input type="radio"/> 조례안이 마련되면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마련할 것임.
<input type="radio"/> 운동장 트랙설치할 용의는?	<input type="radio"/> 2회 추경에 설계비등이 일부반영되어 있으며 도비확보 16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